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28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 안도걸・황명선・정준호

정진욱 • 양부남 • 조인철

서삼석 • 박균택 • 민형배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일자리·복지·문화향유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및 경제력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위축은 물론, 전국 228개 지역 중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되었음.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먹거리인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 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권역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기업의 육성·유치, 인재 양성·유치,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함.

특히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 등의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을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에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 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계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비(非)수도권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혁신산업을 주도할 기업의 창업과 이전, 핵심산업 인력의 양성과 유치,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권역별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 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 3. "자생적 경제생태계"란 권역별 특성에 맞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권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지에서 창업·취업·정착하게 되고, 자립적 생산·소비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말한다.

- 4. "미래혁신산업"이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권역별 성장잠재력을 살려 고부가가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지식・문화 집약형 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5. "미래혁신산업 인재"란 권역별로 차별화된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 생산기술, 기업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등

- 제5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 정부장관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초 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3.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 재의 권역 내 자체 양성, 수도권 및 해외로부터의 유치에 관한 사 항
 - 4.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인력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금융, 주 거, 교육, 행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 한 사항
- 6. 그 밖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
-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 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초 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

- 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①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이하 "초 광역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 2. 종합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3. 시행계획의 승인
 - 4. 초광역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특구·지구·단지 ·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 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 제자유특구의 지정
- 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 9.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 성촉진지구의 지정

12. 그 밖에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제3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권역별 산업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초광 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2.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4.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 5.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인력 유치 및 양성
 - 6.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가스·통신망 등의 정비·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과 개선
 - 7.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철도·항만 등의 정비·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 8. 그 밖에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등에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이하 "지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사항(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변경하려

-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행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④ 제12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시행계획의 승인 절차, 지원시행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도지사등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신속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 획과 지원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지원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 제12조(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설치) ①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미래혁신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및 기반 조성 등

- 제13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지사등과 협의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권역 또는 시·도의 미래혁신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권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혁신산업의 잠 재력
 - 2.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 3.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 4.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미래혁신산업을 선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의 창업 및 이전 여건 개선 등에 관한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을 증설 또는 설치하는 기업 또는 초광역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수도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업용수도
 -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4. 그 밖에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초광역권 미래혁신산 업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 4. 지방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광역 미래혁신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교육기관의 지방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 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교육기관이 권역별 미래 혁신산업 관련 시설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

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미래혁신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및 투자의 확대)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및 육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의 추진)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의 발전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 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제20조(자금 지원 등)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③ 국가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재단으로 하여금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에 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미래혁신산업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창업에 필요한 법률·세무·회계 등에 관한 상담 및 경영·컨설 팅 지원
 - 4. 미래혁신산업 관련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혁신산업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수 있다.
 - ② 그 밖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미래혁신산업 기업 및 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혁신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령에 따라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미래혁신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 2. 미래혁신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 3. 미래혁신산업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 4. 그 밖에 미래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 유치 지원 등

- 제25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를 자체 육성하고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하여야 한다.
- 제26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을 말한다) 등을 신설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미래혁신산업 인재 자녀의 교육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7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전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인력의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벤처·기업창업 지원 등과 관련된 산업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장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제2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 내 미 래혁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생산기술, 기업경영 등 고부가가치 우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를 권역 내 정착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다.
 - ③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명예선양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미래혁신산업 인재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
 - 1. 주거안정을 위한 무상임대주택 공급
 -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과 운영비 지원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1조(해외 우수인력 신속입국·영주·귀화 특례 지원) ① 법무부장 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혁신산업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권역별 미래혁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속한 유 치가 필요한 해외인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영주자격·귀화·사증발급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특례에 의해 입국한 해외 우수인력은 권역별로 소재한 대학 또

- 는 기업의 연구소에 우선 배치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고용지원) ① 정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미래혁신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인턴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지원 사업
 - 2. 미래혁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역 량강화 지원사업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장 초광역권 자생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제33조(초광역권 생활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원) 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권에 수도권에 상응하는 생 활 수준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교통·복지·문화· 의료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원·관리·투자를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자녀 보육, 교육, 통합돌봄, 방과후 활동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34조(초광역 단위 문화·관광의 육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 육 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5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